

김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3-15
------------------	---------

제출년월일 : 2003. 4.

제출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조례안의 개정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 사업의 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했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유지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2002년 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로 3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법인등의 지방이전 유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2003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 나. 예산조치 : 부
-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3) 입법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u>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1. ~ 4. (생략) 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동일)</p> <p>② _____ <u><단서 삭제></u> 1. ~ 4.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안)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 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 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 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 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 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 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u>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u> <u>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u> <u>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u><단서 삭제></u></p>
<p>1. ~ 4. (생략) ② (생략)</p>	<p>1. ~ 4.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안)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 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u>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u>2002년 12월31일</u>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27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 <u>2005년 12월31일</u>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② (생략)	